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9
----------	-----

제출연월일 : 1999.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99. 10. 9.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나 89년도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 당시부터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민시장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

주요골자

- 가. 시민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함.(안 제4조)
- 나. 시설물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거나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5조)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
-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거나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기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용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용허가) ① ~ ② (생략) ③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u>1년</u>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생략)</p> <p>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 <u>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u></p>	<p>제4조(사용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u>2년</u>..... ④(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 <u>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u> <u>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거나 민법의 상속</u> <u>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에는</u>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39
------------	-----

발의년월일 : 2000. 2. 16.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개정 조례안 제5조의 단서규정은 현 시민시장의 문제점을 한시적으로는 해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시장의 재산권 행사를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단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의 금지조항 등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나, '89년 이후부터 현 시민시장 입주전까지 행정의 감독 범위 밖에서 당사자간 사용권이 무단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렇게 할 경우 선의의 사용권 양수자 등이 피해를 입게될 수 있음.
- 이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조례 원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내에 시민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후부터는 재차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거나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5조)
- 부칙 제1항을 부칙 제1조로 함.
-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조로 하고, 현 시민시장 입주자중 최초 사용허가 자로부터 사용권을 양수·상속 받은자와 전대한 자 또는 전대 받은 자는 2000년 10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둠.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항을 제1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항을 제2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미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로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전에 시설물의 사용권리를 양수 또는 전대 받았거나 사실상 상속 받은 후에 다시 허가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에 입주한 자는 2000년 10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5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u>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거나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5조(사용권의 이전금지)..... <u>(단서 삭제)</u></p>
부 칙	부 칙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②(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사용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이미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로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시설물의 사용권리를 양수 또는 전대 받았거나 사실상 상속받은 후에 다시 허가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에 입주한 자는 2000년 10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p>